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 민자유치시설사업

# 실시협약

1997. 2. 21

건설교통부  
(주) 대한항공

# 실시협약

대한민국 정부와 주식회사 대한항공(대표이사 조양호)은 수도권신공항 화물 터미널 "A" 민자유치시설사업과 관련하여 1997. 2. .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동법 제행령 및 제행규칙, 수도권신공항 화물터미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A" (이하 화물터미널 "A"라 칭한다) 민자유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와 주식회사 대한항공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전문회사" : 본 협약의 공사에관한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 전문회사를 의미한다.

2. “감정평가사” : 대한민국에서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포함)중에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을 의미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140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 “건설비용” : 총사업비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임.(단, 준공시점에서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5.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대한민국 법률 제4868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계약에관한법률”이라 칭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383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수촉법”이라 칭한다.)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7. “공사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화물터미널“A”의 최초공사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최종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화물터미널“A” 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9. “화물터미널“A”” : 국적항공사용 화물을 항공기로부터 하역 또는 항공기로 적재하기 위해 보관 또는 화물 분류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화물터미널“B”” : 국적항공사용 화물을 항공기로부터 하역 또는 항공기로 적재하기 위해 보관 또는 화물 분류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말한다.

11. “화물터미널“C” : 외국항공사용 화물을 항공기로부터 하역 또는 항공기로 적재하기 위해 보관 또는 화물 분류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말한다.
12.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상의 채권자단을 의미한다.
13. “민자유치촉진법” : 대한민국 법률 제477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4.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419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5. “시설물” : 화물터미널(훈증실 포함) 및 운송대리점 시설을 말한다.
16.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A” 사업을 의미한다.
17. “본 사업기간” :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8. “본 사업시행자” : 본 협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대한항공을 본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19.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0. “본 협약 당사자” :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21. “사업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1996. 4. 10. 자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화물터미널“A”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내용을 의미한다.
22. “사업시행자 지정” :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무관청이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 대한민국 법률 제4779호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개정법률 포함)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24. “시공사” :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5.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9호(1995. 12. 30.)에 의한 수도권신공항 화물터미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신공항” : 정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도 일원에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을 의미한다.
27. “실시계획” : 본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8. “운영기간”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시설물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29. “운영개시일”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본 시설물에 대한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실제로 본 시설물을 운영하는 공항개항일을 의미한다.
30. “자금차입” :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1. “자금차입계약” : 본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을 위한 계약을 의미한다.
32. “정부”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33. “제반 공급시설” : 본 시설물과 관련되어 설치될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송수, 열공급 등 제반공급(유틸리티)시설을 말한다.
34. “총 사업비” : 총사업비는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규정을 의미한다.
35. “총민간사업비” : 총사업비에서 정부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임.
36. “총민간투자비” : 건설비용, 예비비(물가변동비, 물량변동비) 및 건설 이자의 합계를 의미함.
37. “화물수요” :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착 및 출발되는 화물의 총수요를 의미하며, 수도권신국제공항 기본설계(‘91.12)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수도권신국제공항 항공수요 재검토」(‘95.3.30)의 화물수요를 기준으로 한다.
38. “화물터미널 사용료” : 본 사업시행자가 화물터미널“A”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민자유치촉진법상의 사용료로서 화물터미널“A” 시설물의 임대료를 의미한다.
39. “모든수입” : 본 사업시행자가 화물터미널“A”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40. “한국공항공단” : 대한민국 법률 제3219호 한국공항공단법(개정법률 포함)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41. “할인율” : 시설사업기본계획 4.나).1.항 상의 화물터미널 사용료 등의 함수관계식에서 건설비용 등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 제 3 조 (협약서의 구성)

화물터미널“A” 민자유치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서는 본 실시 협약서 및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부속서류 포함)와 기본설계 도면으로 구성된다.

## 제 2 장 기 본 약 정

### 제 4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정부는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대한항공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 ①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의 시설물 설계와 건설
- ② 제1항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무상 사용.
- ③ 제1항에 따라 건설된 본 시설물의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무상 사용.
- ④ 관리운영권에 의한 제3항의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 제 5 조 (무상사용기간)

본 협약 제4조제3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본 협약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되지 아니하는 한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동안 제4조제4항의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제 6 조 (본 시설물의 귀속)

본 시설물의 소유권은 민자유치촉진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운영기간 종료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

## 제 7 조 (위험부담)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 제 8 조 (사업시행자 및 정부의 의무와 권한)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 ② 본 협약 및 관련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사업기간 동안 제4조에서 규정한 본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 ③ 정부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국적항공사용 화물은 화물터미널 "A, B"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화물수요가 시설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정부는 외국항공사용 화물수요가 화물터미널 "C"의 시설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사전에 한국공항공단과 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의하게 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화물터미널 "A"에서도 외국항공사용 화물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국적항공사용 화물수요의 증가로 확장 및 추가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무상사용기간중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협의가 않될 경우에는 정부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지분을 10%이상의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 장 실시절차

#### 제 9 조 (총민간투자비)



- ① 본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조사비 1억원, 설계비 26억원, 순공사비 855억원, 보상비 0억원, 운영설비비 3억원, 부대비 89억원, 제세공과금 107억원, 영업준비금 52억원, 예비비 198억원, 건설이자 100억원으로하며, 그 총액은 1,431억원으로 한다.
- ② 총민간투자비중 순공사비는 855억원으로 하되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 12조 규정에 따라 제출할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공종별 수량 및 단가가 명기된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 ① 화물터미널"A" 건물외벽 중심선 3m부터 주관로까지의 상·하수도 시설, 오수관로시설, 전기시설, 도시가스시설, 열공급시설 등 제반공급시설

(유틸리티)공사를 본 사업시행자 또는 본 사업시행자이외의 자가 시행하여 본 지역에서 함께 사용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자와 배분하여 본 사업시행자가 분담기로 협의 결정할 경우에는 그 분담금액을 총민간투자비에 반영한다.

- ② 본 협약 체결이후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민간 투자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본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2. 정부가 설계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청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을 인정하는 경우. (단,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서상 설계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지적사항은 제외)
  3. 법규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④ 총민간투자비중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보험료,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운영준비금, 감리비, 환경영향평가비, 외국기술도입비등은 공사기간중 또는 완료후 정산한다.
- ⑤ 위 제3항에 의한 설계변경시 공사량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에 따른다.
- ⑥ 위 제1항 내지 4항까지의 변경내역에 대한 예비비, 건설이자는 사업계획서 제출시의 비율에 따른다.

### 제 11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시설규모는 본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규모(121,151m<sup>2</sup>)로 하되 시설규모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수요 변동에 대한 위험부담은 본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경유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에 의거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2 조 (행정절차 추진)

민자유치촉진법 제15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외에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정부는 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13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의 사유, 정부의 귀책사유등 기타 본 사업

시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4 조 (시설설치 완료기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2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장비의 설치등 시설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15 조 (권한의 위탁)

① 정부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감리전문회사의 지정, 감리비 예치 및 지불
2. 본 협약 제10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협약 제10조 제4항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의 정산.
4. 본 사업시행에 관한 준공검사
5. 공사중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 지시
6. 공사시행에 관한 모든 지도·감독사항
7. 기타 협약상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된 사항

② 위 제1항에 정한 사항에 관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모든 책임을 지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보장한다.

## 제 4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6 조 (보험가입)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 17 조 (민원처리)

본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등 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사항은 본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한다.


### 제 18 조 (안전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대로 안전관리를 하되 추후 보완할 사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과 한국공항공단의 지시에 따르며, 감리전문회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 한국공항공단이사장은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 19 조 (준공확인)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 45일전까지 확정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 1개월 전까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완공후 감리전문회사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한 공사준공검사 신청서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며,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은 준공검사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사장의 준공검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시는 준공확인필증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화물터미널“A”에 대한 관리운영을 할수 있도록 미리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개시일, 최초사용료 기타 필요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본 시설물의 건설과 관련한 공사시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20 조 (임대 및 운영사항)**

- ① 본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A”시설 본래의 용도외에 타 용도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 ② 화물터미널“A”의 임대 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 1. 화물터미널“A” 시설은 국적항공사용 시설로 계획된 만큼 화물터미널 “A”에서는 국적항공사용 화물을 처리하며, 임대를 희망하는 관련기관 및 업체 모두에게 공평한 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업체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임대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하여 실시계획 제출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즉시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에 임대희망 국내·외 업체를 파악(문서확인)하여 임대조건, 임대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가능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포함한 임대계획을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비설치 주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사용기간 만료후 설치된 장비의 처리는 설치자가 자비로 철거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임 사용자와 계속 사용에 대해 협의될 경우에는 협의 결과에 따른다.
5.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 선정과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보험가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내에 정부기관의 입주시 해당 정부기관 및 한국공항공단과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도 일반업체와 동일한 임대기준을 적용한다.
7. 본 사업시행자는 임대 등 사업계획서 제출내용 이외에 화물터미널 "A"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공항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8. 화물터미널 "A" 시설에 대한 본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시설사용자가 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시설사용기간 및 국가로부터 받은 당해 영업은 동시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용자에게 자신의 무상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설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화물터미널“A”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시설사용자가 영업수행상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국가의 정당한 지시 사항에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영업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근거로 본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승인의 취소나 철회를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의무시설(급수, 위생(흡연실), 소화, 전기 및 기타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동 시설이용자의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식당과 휴게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한국공항공단은 화물터미널“A”시설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화물물동량 관련자료 포함)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화물터미널“A”시설 운영실태를 파악 조사케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시행자나 시설사용자는 당해 기본시설물 외에 필요한 추가 시설을 설치, 이전, 폐쇄,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공항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사업시행자는 사용자가 ICAO규정, 항공법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원칙에 의하여 경비감독기관이 정하는 소요의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여 근무배치 및 감독 등의 경비업무를 담당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 21 조 (유지관리)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동안 본 시설물이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전까지 유지관리지침서가 첨부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단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말 다음 연도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를 위한 자기진단 계측 SYSTEM구축
  2. 1, 2종 시설물(특수구조)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3.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계획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준공후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준공도,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와 항공법에 의한 공항 시설 관리대장(건축분야)을 작성하여 한국공항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시행자는 1종, 2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공항공단에 보고한다.
- ⑤ 건설교통부와 한국공항공단은 수시로 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행자에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게 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명할 수 있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설계도서(원본)를 한국공항공단 도면관리에규를 준용하여 관리후 인계하고 무상사용기간동안의 유지관리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한국공항공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운영비)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는 1995.12.30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99,823백만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유지보수비 53,048백만원, 인건비 6,700백만원, 경비 39,744백만원(토지사용료 포함), 고정자산취득비 331백만원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중의 보험료는 본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한 토지는 본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개시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운영개시후 부지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인천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사용료 산정에 반영한다.

## 제 5 장 화물터미널 사용료



### 제 23 조 (할인율)

할인율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6.22%로 고정된 것으로 한다.

### 제 24 조 (사용료)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동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관련 제규정을 준용하되 시설 사용자와 별도 협약에 따라 변경할수 있다.

- ② 화물터미널“A”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화물터미널“A”의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

- ① 사용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관련 사항은 아래의 함수관계식에서 산정한다.

$$\sum_{t=1}^n CC_t + CR = \sum_{t=n}^N (OR_t - OC_t)$$

여기서,

n : 무상사용기간 개시시점

N :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점

CC<sub>t</sub> : 시설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건설비용의 현재가치

CR : 시설준공을 위한 총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윤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9호의 이윤에 해당)

OR<sub>t</sub> : 운영에 따른 매년도 모든 수입의 현재가치

OC<sub>t</sub> : 운영에 따른 매년도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

- ② 제10조(제10조제3항제3호 제외)에 따르는 조정과 공사시행중 또는 완공후에 천재지변, 정부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산시는 무상사용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준공시까지의 총민간사업비가 사업시행자 지정시와 비교하여 20%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20%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만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준공필증이 교부되고 장비설치 등이 완료되어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공항개항일까지의 공항개항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본 사업시행자간 협의에 의해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제10조제3항제3호로 인한 변경은 사용료에서 조정한다.
- ⑥ 무상사용기간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년이 초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국가의 정책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정부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최초사용료)**

- ① 사용료는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144,820원/m<sup>2</sup>·년(1995.12.30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연간 본 사업수입의 합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시설용도별로 차 등을 들수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운영개시점에 적용할 최초사용료는 사용료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 제 6 장 불가항력 사유

### 제 27 조 (불가항력 사유)

향후 협약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사태를 포함한다.

- i). 전쟁 기타 적국의 침공행위.
- ii). 폭동, 혁명 또는 내란.
- iii). 예측 불가능한 재해(자연재해에 한정하지 아니함).

### 제 28 조 (책임부담)

본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 29 조 (불가항력 발생통지)



불가항력 사유가 발행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동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0 조 (불가항력의 대책협의)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의한 통지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개시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책 및 이에 대응한 본 협약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제 7 장 협약의 종료

### 제 31 조 (협약의 종료)

① 다음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정부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3. 본 사업시행자의 주주총회에서 사업시행자의 해산 및 청산을 결의한 경우

4.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본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한 본 협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동 기간의 만료로 본 협약은 종료된다. 단, 본 협약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본 협약 제30조에 따른 협의 개시후 60일 이내에 본 협약 당사자간에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27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송한후 6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자금차입계약이 사전 종료하고 그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를 대체할 자금 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③ 본 협약이 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본 시설물(공사기간중인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그 해지당시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본 협약이 위 제1항 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정부는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본 시설물(공사기간중인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그 해지당시의 적정가치에 관리운영권의 그 당시의 적정가치를 더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위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각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적정가치에 대한 본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그 적정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위 적정가치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감정평가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결과를 본 협약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결과에 따라 해당 적정가치를 인정하기로 하며, 정부는 감정평가사의 위 서면 통보후 해당 금액을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본 협약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 위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시점까지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황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는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인수하거나 대주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를 인수하게 하기로 한다. 본 제6항에 따라 정부가 본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동 채무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⑦ 본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 제5조에 규정한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한다. 또한, 본 협약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종료되는 경우에는 위 무상사용기간 및 운영기간도 함께 종료된다.

⑧ 본 협약이 운영기간의 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만료일 6개월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운영기간 만료일에 화물터미널“A”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건설교통부에 인계한다.

2. 위 시설점검 결과 화물터미널“A”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전까지 본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 제 8 장 분쟁의 해결

### 제 32 조 (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같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상사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로 한다.



## 제 9 장 비 밀 유 지

### 제 33 조 (비밀유지)

- ① 본 협약 당사자 쌍방은 본 협약의 종료 여부에 불구하고 타방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본 협약의 내용이나 본 협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타방 당사자의 업무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4. 정보 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제 10 장 기 타

### 제 34 조 (자금의 차입등과 정부의 협조)

건설교통부는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본 사업시행자가 대주단과의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본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등 주요사항에 대한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한다. 건설교통부는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한국공항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등)으로 하여금 대주단의 요청에 협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 35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 내용 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 내용에 따라 동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 36 조 (공사에 관한 협약)

공사에 관한 협약사항은 별첨 “공사에 관한 협약” 제16조제8항까지와 같다.

### 제 37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 제 38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본을 정본으로 한다.

### 제 39 조 (본 협약의 승계)

본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본 협약상의 본 사업시행자의 모든 지위 및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승계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건설교통부는 이를 승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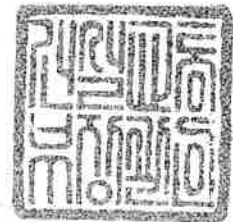
**제 40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 당사자는 첫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1997. 2. 21.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장관 추 경 석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 양 호



별첨

## 공사에관한협약

### 제 1 조 (건설사업이행보증)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따른 건설사업이행보증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 조 (지체상금의 납부)

- ①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의 완공기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는 그 실제 완공일까지 미완공분의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1일당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 제1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은 연장된 완공기한 이후부터 부과한다.

### 제 3 조 (공사의 도급)

- ① 본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업법 제22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감리전문회사는 위 하도급을 받은 자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건설업법 제23조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본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도급자의 시공과정에서 노임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도급자의 기성부분 중 체불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 제 4 조 (공사의 착수)

- ① 본 사업시행자는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거쳐 건설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초 공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 사업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5 조 (공사감독)

본 사업의 공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도권신공항 건설공단이사장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 제 6 조 (책임감리)

- ① 건설공단 이사장은 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본 화물터미널“A”의 공사에 대하여 동법 및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건설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매 분기의 감리비를 그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첫째 날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건설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건설공단은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감리비를 감리전문회사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 제 7 조 (공정보고)

- ① 본 사업시행자는 본 화물터미널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 공사추진현황을 건설공단이사장을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사업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 8 조 (기성검사)

본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전문회사는 기성검사 완료후 지체없이 본 사업시행자와 건설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9 조 (설계 및 일반사항)

- ① 화물터미널"A"시설의 건설위치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위치로 하며, 본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에 있어 인천국제공항 기본계획 및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건설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중인 세부평면 배치계획 내용에 부합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시한 설계내용 및 정부와 협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 및 건설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단계별 주요내용 및 공정에 대하여는 건설공단의 ‘공정관리절차서’에 따라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전체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설계시 관련 전문가로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최소 3회이상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자문결과 및 조치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시설계도서는 본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하되 본 협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건설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설계, 공사, 감리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공단 이사장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이 공항내 타 시설과 동일한 품질확보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관리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⑦ 본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 제작, 설치, 시공 등 모든 업무범위에서 국제품질 규격인 ISO 9001 또는 KSA 9001 품질시스템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한 후 이에 따라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건설공단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건설을 위한 자재수급과 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공단에 요청할 경우에는 가급적 지원하여야 한다.
- ⑨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동 내용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⑩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시에는 관련법규 및 건설공단이 제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며, 계획수립 및 설계시 건설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⑪ 인천국제공항 운영시에는 TMS(환경감시시스템)이 설치되므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서 정화처리되는 배출가스, 수질 및 소음에 대한 측정·감시가 가능한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AICC 및 TMS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⑫ 환경오염방지시설(오염물질을 공동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포함)의 측정장비에서 생산되는 DATA를 TMS로 전송하기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TMS의 전송회선사용 불가시 DATA 전송을 위한 유선 또는 무선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⑬ 본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전 건설공단의 관리기준 공정계획에 따라 전체시설물과의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⑭ 본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공항시설에 대한 설계이므로 조사내용, 중간결과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⑮ 협약에 따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단에서 수행한 부대건물 관련 설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제 10 조 (토목시설)

- ① 건물의 위치가 확정되면 공단의 Landside 설계팀에게 건물좌표를 제시하여 도로 및 주차장 등 공공시설 설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시설물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주변 포장공사와의 업무분담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반 오수는 건설공단에서 별도 계획 추진중인 주간선 우수관로상의 맨홀에 연결 배출시켜야 하므로 본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양, 수질의 특성, 배출관로의 관경 등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단에 제출하여 주간선 우수관로의 계획수립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규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하로 전량 완전처리하여 주변 배수로에 연결 방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화물터미널 주기계획 : 건설공단에서 수행중인 AIRSIDE 토목시설 실시 설계에서는 화물터미널 건물형태 및 주기계획을 당초 기본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1 Module당 4대의 E급 항공기를 주기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발주중이므로 사업시행자는 건설공단에서 계획한 화물터미널 항공기 주기계획을 기준하여 화물터미널 건축설계를 하여야 한다.
- ⑤ 화물터미널 배수계획 : 사업시행자는 건설공단에서 수행중인 AIRSIDE 토목시설 실시설계에서 계획된 간선 및 지선 배수계획을 기준하여 건물의 우수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공단에서 확정된 건물주변 집수정 위치까지 배수관로를 연결하여야 한다.
- ⑥ 기초 슬래브 설치전에 이 지역에 연약지반처리 시행으로 압밀 처리를하여 장기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본 사업시행자는 본 건물의 유틸리티 수용을 위하여 지선 공동구를 설치하되 건물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잔여구간은 본 협약 제10조제1항에 의거 상호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공동구 설계시에는 2단계 이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 11 조 (건축시설)

- ① 화물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위치결정에 있어 건물로 인한 ILS에 전파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건물의 입면 및 색채계획은 공항전체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건설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 ③ 건물의 외부시각디자인(Signage & Graphics) 설계시에는 건설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Signage & Graphics 설계지침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세부 실시사항은 건설공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건물의 마감자재에 대하여는 광선이나 전파의 난반사 등으로 인해 공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건물 설계시에는 건설공단의 염해방지 관련 시방서를 준용하여 염해에 충분히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 ⑥ 건물의 구조는 매립지반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완벽한 지반조사를 근거로 설계하고, 특히 발생가능한 지진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본 설계에 반영할 기준을 수립한 후 실시설계토록 한다.
- ⑦ 구조가 화물이동 및 취급에 적합한지 여부를 건설공단과 협의하고, 이의 적절한 규격과 이에 연관된 여타 구조물의 크기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본 건물 설계시에는 시설물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에 의거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계설비 시설)**

- ① 본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건물의 주용도상 비상급수 및 중수탱크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는 비상급수 및 중수탱크를 자체 또는 그룹별로 설치하고 건물에서 요구되는 양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 ② 냉난방을 위하여 공급되는 열원은 열병합 배열인 중온수 이외에는 없으므로 본 시설에서 필요로 되는 냉난방 장치는 자체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추후 건설공단과 상호 합의하여 결정될 열공급 배관설치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④ 건물내에는 중수를 이용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각종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시행자는 건물외벽 중심선 3m까지만 제반공급시설을 시행하고 건설공단은 주 공동구 외벽 1m까지의 제반 공급시설을 시행하며 잔여구간은 본 사업시행자와 본 협약 제10조제1항에 의거 상호 협의후 시행한다.
- ⑦ 본 시설과 다른 화물터미널 건물과의 유틸리티 연결은 관련 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공단은 이와관련 사업시행자간의 협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⑧ 가스배관은 사업시행자가 인천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주라인에서 분기하여 설치하며, 본 관로의 유지보수도 본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⑨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중온수, 중수, 급수) 계량기를 건설공단과 협의하여 건물 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⑩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의 사용료를 건설공단과 협의후 납부하여야 한다.(중온수 사용료는 열병합 사업자, 건설공단, 사용자와 협의후 확정)
- ⑪ 본 사업시행자는 냉동설비를 위한 CFC계 냉매와 소화설비를 위한 HALON 가스 사용을 지양하고 오존 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대체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⑫ 본 사업시행자는 각종 유틸리티 배관 재질을 선정함에 있어 시공 및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건설공단에서 사용 예정인 배관자재를 준용하여 사용하고, 부득이 종류가 다른 재질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건설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전기설비 시설)

- ① 모든 전기설비는 공항기능의 충족성, 에너지절약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신공항의 전력시설설계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수전설비는 신공항 전력계통에 부합되는 수전설비를 계획하되, 안전성, 경제성, 공급신뢰도를 고려하여 건설공단과 협의하에 설계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지역에 설치되는 화물청사지역 배전변전소 또는 화물청사내 변전소의 수전설비로 부터 전력선로를 인출하여 수전(상시1회선,비상 1회선)하여야 하며, 시설확장시 전력공급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전설비를 고려하고, 여타 화물청사에 전력을 공급하기위해 사업시행자 측 수전설비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인출용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자체 배전설비는 각각의 시설이 요구하는 공급신뢰도, 공급용량, 공급전압 등을 만족하는 계통으로 설계하되 배전설비의 배치등은 전력손실을 고려하여 부하의 중심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조명설비는 건물의 기능 및 분위기를 고려한 조명방식, 광원, 조명기구를 선택하여야 하고 대규모 복합기능 건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절약을 고려한 조명자동제어 방식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⑥ 설계시에는 우선적으로 단계별 전력수요를 건설공단에 제출하여 건설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설계 및 신공항 단계별 전력공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수전설비는 단계별 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⑦ 건물 및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상용전원외에 예비 비상발전설비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화물청사 계류장조명을 위한 전원공급은 화물청사별 변전실의 저압배전반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⑧ 건설공단이 계획하는 신공항 전력통합감시 및 제어시스템 구축과 연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화물터미널“A”의 전력감시정보가 공단시스템에 제공되어야 하며, 관련시설의 구성은 건설공단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단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화물터미널“A”의 건물외벽 중심선 3m까지의 LAN망 설치는 건설공단에서 시행한다.
- ⑨ 전력공급 및 공사시행 구분에 있어서 책임분기점은 화물청사지역 배전변전소 또는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 특고압 차단기(22.9KV) 2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사고의 파급방지 및 계통보호 협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전력사용량 계량을 위한 장치(MOF 및 DM)는 본 사업시행자측 수전설비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화물청사지역내 설치될 화물청사지역 배전변전소의 설계시공은 공항전체 전력계통 구성 및 확장성을 감안하여 건설공단이 일괄 시행하고 이에따른 건설비용은 동 시설의 이용시에 공항시설 운영주체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한다.
- ⑪ 본 사업시행자는 민자유치시설의 배치에 있어 동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중간배전변전소의 위치를 감안하여 건설공단과 협의하여 전체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⑫ 공항종합정보통신센터(AICC), 공항소방대등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화물청사 운영정보, 경비보안, 화재탐지정보등은 동 시설 설계시 건설공단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설공단의 통신망에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단, 건설공단의 각종 통제실로부터 화물터미널“A”의 건물외벽 중심선 3m까지의 LAN망 설치는 건설공단에 서 시행한다.
- ⑬ 항공기 동력용 전원설비(400Hz Power Supply System)는 장래항공기의 동력소요 및 공항의 환경오염을 감안하고, 각 항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운영계획에 따라 장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⑭ 화물터미널 건설기간중에 공사용 임시전력을 건설공단이 선투자한 배전 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기수용용량 및 사용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시설분담금을 건설공단의 청구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4 조 (통신설비 시설)

인천국제공항의 모든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공단에 의해 통합 구축 및 운영될 것이므로 본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단, 각 법인의 고유한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은 통합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① 사업의 정보, 통신 및 자동화시스템 부분은 계획, 설계, 구축/시공 및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건설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자 (MSI, Master System Integrator)와 협의하고, 시스템통합에 관한 한 동 계약자와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가 인천국제공항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공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의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7년도에 작성될 건설공단의 시스템통합기준, 정보통신 기술기반구조 및 시스템통합표준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시스템통합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시스템 통합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화물터미널의 자동화시스템으로부터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운영자 고유의 업무영역 및 비밀사항 등은 제외 한다.

#### 제 15 조 (소방시설)

- ① 각 사업시행자간 상이한 소방시스템을 구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 동일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은 본 사업시행자가 관계법규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인·허가 사항도 본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소방시설은 소방법 및 국내외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④ 소방시설 설계시 소방협회, 화재보험협회, 인천광역시 소방담당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인천국제공항의 소방시설 통합감시체계와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성·시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도면작성 및 제출)**

건설공단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은 물론 운영과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과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 관리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통일화하고, 이를 Data Base로 구축·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건설공단이 제공하는 설계통합기준서와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① 동 기준서에 없거나 신규 발생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단과 사전 협의한다.
- ② 본 사업시행자는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CAD System(Auto CAD)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하드카피와 함께 동자료를 전자화일 형태(디스켓, 테이프 등 저장매체)로 제출하되 동자료는 건설공단의 CAD System (건설공단은 Auto CAD, 고은글 사용중임)과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도면은 벡터자료로, 외부 참고자료는 라스터 또는 벡터자료로 제출하되, 벡터자료는 \*.DWG, \*.DXF 화일 포맷으로, 라스터자료는 TIFF 화일 포맷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 ④ 지형도 입력사항 및 기준은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7호 : '95. 5. 29)에 의거 표준코드와 표준도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⑤ 도형 데이터는 도면의 종류와 레이어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보고서는 보고서와 함께 동 내용을 수록한 전자 화일(디스켓, 테이프 등 저장매체에 수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하되,





건설공단이 사용하는 Word Processor(건설공단은 한글 3.0, 아리랑 3.0을 사용함)와 호환되어야 한다. 제출되는 전자화일은 자료화일 목록을 포함한다.

- ⑦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Data Base화 하였을 경우에는 동 자료를 디스켓 등 기억장치에 수록하여 동 기억장치와 목록 및 테이블을 제출한다.
- ⑧ 기타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